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00호
- 나. 발 의 자 : 이민석 의원(찬성자 34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최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기기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무인정보단말기 145대 중 관련 표준화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기는 30대에 그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접근성 증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 제품을 제공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나 정보통신 이용·접근성 보장을 구체화하고, 이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안 제3조의2제1항 각 호)

- 개정안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명시하여 정보취약 계층의 이용·접근성 보장의 대상물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정보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¹⁾에서 정하고 있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 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접근성 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개정안과 같이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무인정보단말기 ► 전자출판물 ►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은 일반인조차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특히 어린 아이와 고령자, 시각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터치 스크린에 쉽게 닿기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음성 해설 없는 키오스크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의 규정 없이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 서비스의 종류를 유추할 수 있기는 하나 시민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고려한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2)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 접근·이용 노력(안 제3조의2제2항)

-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서 명시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 서울시 무인정보단말기 현황에 따르면(2023.5. 기준, 조사결과 별첨) 서울시와 소속 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무인정보단말기는 145대이며, 이 중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²⁾에 따른 기기는 21대,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지침(KS X 9211, 국가표준)³⁾에 따른 기기는 9대에 불과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제작된 기기의 사용률은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표준가이드마저 무시한 행정운영이라 할 수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울디지털재단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KS X 9211)의 준수를 전제로 고령층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담고 있음.

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작한 국가표준임.

- 따라서 서울시 내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에 있어 정보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 포용 사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상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계층을 포괄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개 정 안	수 정 제 안
제3조의2(접근성 보장) ② <u>시장이</u>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u>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u> 」 제15조제3항에 <u>따라</u>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접근성 보장) ② <u>시장은</u>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제46조에 <u>따라</u>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무인정보단말기 운용 현황(2023.5. 기준)

(단위 : 대)

연번	부서명	키오스크 용도	수량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적용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 X 9211) 적용
계			145	21	9
1	서울우리소리 박물관	시설 안내	1	-	-
		아카이브 전시	3	-	-
2	서울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대출·반납 등)	1	1	1
		대출반납기	7	7	-
		무인반납기	1	1	-
		전자신문	1	1	-
		도서관 안내	2	2	-
3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이용권 발매	4	4	-
		체육시설 관광권 및 입장권 발급	3	3	-
4	어린이병원	진료비 무인 수납	2	-	-
5	서울역사 박물관	도시모형영상관 지리정보전달	4	-	-
		정동모형 정보전달	2	-	-
		사진 촬영 및 전송	2	-	-
		상설전시 정보전달	4	-	-
		상설전시 유물정보전달	1	-	-
		한양도성 관련정보 전달	3	-	-
6	경교장	전자방명록	1	-	-
7	청계천박물관	상설전시 정보전달	1	-	-
		사진 촬영 및 전송	1	-	-
8	동대문역사관	사진 촬영 및 전송	1	-	-
		상설전시 정보전달	6	-	-

연번	부서명	키오스크 용도	수량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적용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 X 9211) 적용
9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상설전시 정보전달	1	-	-
		사진 촬영 및 전송	1	-	-
10	한양도성 박물관	상설전시 정보전달	4	-	-
		전자방명록	1	-	-
		순성체험영상	1	-	-
11	백인제가옥	상설전시 정보전달	1	-	-
12	돈의문전시관	경희궁 정보전달	1	-	-
13	공평도시유적 전시관	상설전시 정보전달	3	-	-
14	서울생활사 박물관	상설전시 정보전달	1	-	-
		사진 촬영 및 전송	1	-	-
15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의시설)	이용료 납부용	2	2	-
16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안내 등	2	-	-
17	어르신복지과	교육용,식권발매용 (시립노인복지관에 설치)	42	-	-
18	청소년정책과	카페 주문	1	-	-
19	서울시립대	학생증명서 무인발급	2	-	-
		교내식당 및 카페 주문	11	-	-
		도서관 좌석 및 스테디룸 예약	11	-	-
20	서울시립과학관	티켓발매기	3	-	3
		주차정산기	2	-	2
		체험형 발권기	3	-	3

의안번호
100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민석 의원 발의	2023. 8.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증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기여함 〈주요 입법 요지〉 ○ 정보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6. 3. 24. 제정)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9. 7. 18.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22. 3. 10.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23. 5. 22. 일부개정)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개정조례안이 정보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증진에 부합되어 조항 신설에 동의		
대응방안	○ 필요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향 후 계 획	○ ○		
담당부서	뉴미디어담당관	팀장 류은희(☎02-2133-6500)	담당 박은미(☎02-2133-6515)